

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(제24조제2항 관련)

안전등급	기 준
A(우수)	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
B(양호)	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
C(주의)	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(危害)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·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
D(경고)	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,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
E(위험)	기술기준에 따른 점검·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